

변경내역서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2. 변경신탁계약 체결일 : 2010. 8. 19
3. 신탁계약 변경내역

| 현 행 | 변 경 |
|---|---|
| 제52조 (투자한도) | |
| 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단,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<u>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3.~6.(생략)</p> <p>6-1.주식과 <u>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</u>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2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| 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단,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<u>주식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</u> 회사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3.~6.(현행과 동일)</p> <p>6-1.주식과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</u>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2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|